

# 포용사회를 위한 법적 조치

서인환(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 <초록>

포용을 '통합'이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 수용을 의미하느냐, 합하여진 것을 강조하느냐에 따라 조금은 의미가 다를 수 있다. 호주의 포용법은 서비스법을 개정하였지만 선택권을 인정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완전한 참여와 포용을 위해서는 보다 거시적인 인권보장과 참여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모든 법적 조치를 위한 조건들을 정리해 보았다.

## 1. CRPD에서의 포용

'Inclusion'을 'magnanimity' 또는 'embrace', 'engagement'로 해석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combine', 'integrate'로 해석하는 국가가 있는 듯하다. 한국은 후자에 해당한다. 전자는 수용한다는 의미가 강하고, 후자는 합하여지는 것의 의미가 강하다.

CRPD 전문에서는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증진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포괄적이고 포용적인 것이 CRPD라고 하고 있다. 제3장 원칙에서는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참여와 포용을 말하고 있다. 제16조에서는 학대로부터 재포용을 말하고 있고, 제19조에서는 자립생활과 지역사회 포용을 위하여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정하고 있다. 24조 교육과 26조 재활, 29조의 근로에서도 포용을 언급한다. 포용은 모든 수준에서 삶의 전 분야에서 동등하고 완전한 참여로써 포용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교육에서의 포용은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에서의 장애인교육의 실시를 위한 개별화교육과 교육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누릴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요구된다. 근로에서의 포용은 경쟁고용 사회에서의 동등한 대우와 차별금지 및 훈련 등이 포함된다. 지역사회에서의 포용은 탈시설과 정치, 사회, 문화, 경제에서의 완전한 참여보장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법적으로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까?

## 2. 호주의 포용법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장애포용법에서는 장애인서비스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서비스 선택권 보장과 포용사회를 추구하고 있다. 내용으로는 장애인의 동등한 인권을 선언하고, 포용 실행계획을 수립하며, 재정지원을 통한 서비스 선택권 확대와 서비스 접근권 보장과 장애인 학대 의무신고제를 실시하고 있다.

## 3. 한국의 포용사회를 위한 법적 조치

교육에 있어서는 포용교육을 지향하고 있으나 분리교육도 현실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고용에 있어서는 경쟁고용의 통합을 위하여 장애인고용 쿼터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과 장애인 미고용시 부담금을 징수하고 있으나 직업재활시설에서의 분리고용에서는 최저임금 적용의 예외대상으로 하고 있다. 거주시설에서의 탈시설 정책을 가지고는 있으나 거주시설 이용권을 하나의 서비스로 인정하고 있다. 자립생활을 위하여 활동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장애 등급을 폐지하고 종합조사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활용한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으나 장애인들의 서비스 선택권과 지역사회 참여는 부족한 실정이다. 장애인식개선을 위하여 국민들의 교육을 의

무화하고 있으나 이 제도는 도입단계에 있다. 문화향유권을 위하여 문화바우처 제도를 실시하여 구매권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소액지원을 하고 있으며, 편의시설과 접근권은 아직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장애인정책이 저소득 장애인 빈민 정책이나 경제적 경감 정책에 그치고 있다.

#### **4. 포용사회를 위해 필요한 추가적 법적 조치**

##### **1) 장애인지 예산제 도입**

이 제도는 정부와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집행되는 사업들이 장애인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는 것이다. 어떤 예산은 장애인에게는 전혀 혜택이 없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육교를 설치하는 경우 엘리베이터가 없다면 이 예산은 장애인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 설치 등의 추가적 예산이 필요하다. 저소득층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한 지원 정책에서 장애인의 격차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면 추가적으로 장애인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과 정책이 필요하다. 아직 장애인지 예산제를 도입하고 있는 국가는 없으나, 성인지 예산을 실시하는 국가는 있다.

##### **2) 직접지불제/현금지불제 실시**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현물로 제공하는 대신 이를 현금으로 지급하여 서비스를 선택하여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용처의 한계를 정하고 사용 후 영수증을 정리하여 정부에 보고하기 위하여 이를 대행하는 지원단체가 필요하다. 그리고 개인별로 어느 정도의 현금을 지급할 것인지 평가하는 도구가 필요하다. 장애인의 선택권에 의해 서비스와 현금의 선택권도 필요하다.

##### **3) 장애인식개선 강화**

한국에서는 장애인식개선 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인식개선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인식개선 강사를 양성하고 있으며, 학생, 공무원, 직장인들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시간과 비용의 문제가 있을 경우 인터넷 교육도 허용하고 있다. 과태료는 개인이 아니라 고용주와 기관장에게 부과된다.

포용을 위한 정책은 예산의 투입 이전에 시민들의 인식변화가 더욱 중요하다. 편견과 차별이 없는 사회가 되어야 포용사회를 만들 수 있다.

#### 4) 장애인권과 포용법의 제정

접근권은 포용사회의 환경적 요소를 구축하는 것이다. 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건축물의 편의시설 확충과 인터넷, 모바일, 가전제품, 키오스크 등의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한국에서는 공공건물은 편의시설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신축건물에만 적용하고 있다. 인터넷 등은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다.

서울시의 한 지역 정부에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예산과 건축, 사업의 시행에 앞서 장애인인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그 위원회에 장애인 당사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 차원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하고 대통령 직속기구로 만들어줄 것을 장애인들은 원하고 있으나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위원회는 포용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지역에서는 인권조례를 통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하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 인권침해 구제를 하거나, 감시하는 기능을 하기도 하고, 정책의 완전한 포용정책의 심의를 하는 곳도 있다.

#### 5) 포용교육

물리적 포용은 오히려 방임이 될 수 있다. 포용교육은 시설의 접근성과 서비스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 유통과 서비스의 충분한 양이 매우 중요하다. 개별화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력이 더 배치되어야 하고, 맞춤형 교육이 되도록 교재교구의 개발 보급과 교육과정의 전산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포용교육의 성공여부는 학교교육의 재구조화를 시행하는가가 관건이다.

## 6) 포용고용

중증장애인의 포용을 위하여 고용에서의 역할을 만들어내어야 한다. 현재 장애인들은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면서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거나 보호고용 시장에서 최저임금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의무고용 쿼터제는 어느 정도 효과는 있으나 대기업일수록 기피하고 있으며, 정부부처는 단순한 업무만 장애인 직종으로 개발하고 있다. 장애인의 고등교육을 활성화하고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제도가 필요하며, 고용률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고용과 현장 중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 공학보조기구나 개조된 업무환경, 근로지원인제도 등도 필요하다. 포용고용의 성공의 키는 장애인의 훈련을 통한 양질의 인재양성과 환경조성, 그리고 인식개선에 있다,

## 7) 포용 지역사회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현재의 시설 장애인의 탈시설 정책이 필요하다. 중증장애인과 정신장애인의 시설 위주의 서비스를 주택과 소득보전, 권익옹호, 지역사회 참여의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 동등한 입장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혜의 대상이 아닌 등등한 수준의 삶이 보장되어야 지역사회에서의 포용사회가 가능하다.

## 8) 완전한 참여

국회와 지방정부 의회의 장애인의 피선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직능별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장애인의 국회의원이 최대 7인까지 있었던 때가 있었으나, 현재는 장애인 당사자 의원은 있으나 장애인 대표 의원은 없다. 지방정부 의회에서는 장애인에게 우선공천을 통하여 어느 정도 장애인 대표가 존재하고 있다. 선거에서의 참여권은 접근권과 서비스가 병행되어야 한다. 문화는 장애 문화의 독창적 영역의 인정과 문화포용을 위한 향유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단지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바우처 제도로 구매권을 일부 지원하거나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정도

로는 완전한 참여와 포용을 기대하기 어렵다.

## 5. 결론

포용은 다수의 집단이 소수의 집단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다수집단의 사회를 강요당하는 것도 아니다. 서로 인정하고 수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포용사회는 소수가 한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편견과 차별이 없어야 하며, 모두가 살아가기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지 지원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원책의 효과와 대안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포용을 위한 강력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장애계층을 하나의 문화계층으로 인정하면서 그 계층이 동등하게 살아가도록 완전한 참여를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정부의 예산과 정책이 완전한 참여와 포용을 실현하는 데에 충분하가를 평가하고 추가적 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시민의식 변화와 동등한 권리실현을 위한 구체적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